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85679(본소), 2021나85686(반소) 판결
[물품대금 ·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85679(본소), 2021나85686(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56882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경수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변론종결 2022. 3. 17.

판결선고 2022. 4.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568824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64,055,341원임을 확정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64,055,341원임을 확정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소외 D유한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독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D유한공사와 피고는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반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유한공사가 2021. 3. 25.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7472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물은 채무불이행 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소독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동일하지 아니하여 중복제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경선, 판사 김리사